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701

발의연월일: 2021. 1. 27.

발 의 자:이종성·성일종·박덕흠

한무경 • 권성동 • 권명호

김용판 · 정동만 · 추경호

윤창현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반려동물 관련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물 학대는 끊이지 않고, 유실·유기동물도 점점 증가하고 있음. 특히 반려동물에 대한 지식이 없고 반려동물을 키울 여건이 되지 않는 사람들도 반려동물을 무분별하게 소유할 수 있음에 따라 반려동물 학대나 유실·유기를 예방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게다가, 현행법에서 동물을 보호하고자 동물 소유자가 소유한 동물을 각 자치단체에 등록을 하도록 하고 있으나, 사인 간의 거래 등으로 등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임.

이에 반려동물을 소유·사육하려는 자는 반려동물에 관한 교육 이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동물의 소유자가 그 소유한 동물을 타인에게 분양하려는 경우에는 동물판매업자의 중개를 통하도록 하며, 아울러 반려동물의 이력을 출생 단계부터 관리하기 위하여 동물생산업자로 하여금 동물이 출생한 경우 출생동물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22조의2 및 제36조의2신설).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1조의2(반려동물 소유 등 등록) ① 반려동물(개 또는 고양이로 한 정한다)을 소유·사육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 다.
 -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반려동물에 관한 교육이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③ 등록을 하려는 자가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제46조에 따른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

제2장에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사인 간 동물의 분양) 동물의 소유자가 그 소유한 동물(개 또는 고양이로 한정한다)을 타인에게 분양하려는 경우에는 제32조제 1항제2호에 따른 동물판매업을 하는 자(이하 "동물판매업자"라 한 다)의 중개를 통하여야 한다.

법률 제16977호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 제36조제2항 중 "제32조제1

항제2호에 따른 동물판매업을 하는 자(이하 "동물판매업자"라 한다)는 "을 "동물판매업자는"으로, "판매하는"을 "판매(중개를 포함한다)하는"으로 한다.

제3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36조의2(출생동물의 등록 등) ① 제32조제1항제4호에 따른 동물생산업을 하는 자(이하 "동물생산업자"라 한다)는 동물(개 또는 고양이로 한정한다)이 출생한 경우 해당 동물(이하 "출생동물"이라 한다)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② 출생동물을 등록한 자는 출생동물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변경사항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③ 동물생산업자는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지 아니한 동물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출생동물의 등록 사항 및 방법·절차·변경신고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렁으로 정하며, 그 밖에 등록에 필요한 사항 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법률 제16977호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 제4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7까지를 각각 제2호의3부터 제2호의8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의2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제5호

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5호의2를 제5호의3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반려동물을 소유 사육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2의2.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지 아니한 소 유자
- 6. 제36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한 출생동물을 판매한 자
- 5의2. 제22조의2를 위반하여 동물판매업자의 중개를 통하지 아니하고 동물(개 또는 고양이로 한정한다)을 타인에게 분양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반려동물 소유 등록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법 시행 이후 반려동물(개 또는 고양이로 한정한다)을 소유·사육하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 | | | |
|---------------------|------------------------|--|--|--|--|--|--|--|
| <u> <신 설></u> | 제11조의2(반려동물 소유 등 등 | | | | | | | |
| | 록) ① 반려동물(개 또는 고양 | | | | | | | |
| | <u>이로 한정한다)을 소유·사육</u> | | | | | | | |
| |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 | | | | | | |
| |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소지 | | | | | | | |
| | 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 | | | | | | | |
| | 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 | | | | | |
| |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고 | | | | | | | |
| | 자 하는 자는 반려동물에 관한 | | | | | | | |
| | 교육 이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 | | | | | | | |
| | 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 | | | | | |
| | ③ 등록을 하려는 자가 제8조 | | | | | | | |
| |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 | | | | | | |
| | 위반하여 제46조에 따른 형을 | | | | | | | |
| |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 | | | | | | | |
| | 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 | | | | | | |
| | 에는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할 | | | | | | | |
| | <u>수 없다.</u> | | | | | | | |
| <u><신 설></u> | 제22조의2(사인 간 동물의 분양) | | | | | | | |
| | 동물의 소유자가 그 소유한 동 | | | | | | | |
| | 물(개 또는 고양이로 한정한다) | | | | | | | |
| | 을 타인에게 분양하려는 경우 | | | | | | | |
| | 에는 제32조제1항제2호에 따른 | | | | | | | |

- 제36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① 제36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① (생 략) (현행과 같음)
 - ② 제3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동물판매업을 하는 자(이하 "동물판매업자"라 한다)는 영업 자를 제외한 구매자에게 등록 대상동물을 판매하는 경우 그 구매자의 명의로 제12조제1항에 따른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신청을 한 후 판매하여야 한다. ③ (생 략)

<신 설>

- ③ (현행과 같음)
- 제36조의2(출생동물의 등록 등)
- ① 제32조제1항제4호에 따른 동물생산업을 하는 자(이하 "동물생산업자"라 한다)는 동물 (개 또는 고양이로 한정한다)이 출생한 경우 해당 동물(이하 "출생동물"이라 한다)을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② 출생동물을 등록한 자는 출 생동물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 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

제47조(과태료) <신 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2. (생 략) <신 설>

2의2. ~ 2의7. (생략)

된 경우에는 변경 사유 발생일 부터 30일 이내에 그 변경사항 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 고하여야 한다.

- ③ 동물생산업자는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지 아니한 동물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출생동물의 등록 사항 및 방법·절차·변경신고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 부렁으로 정하며, 그 밖에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47조(과태료) ① 제11조의2제1 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 고 반려동물을 소유·사육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 료를 부과한다.

<u>②</u> ------

1. • 2. (현행과 같음)

2의2.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지 아니한 소유자

<u>2의3.</u> ~ <u>2의8.</u> (현행 제2호의2

3. ~ 5. (생 략) <u><신 설></u>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 4. (생략)
- 5.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
 <삭 제>

 록대상동물을 등록하지 아니
 한 소유자

<신 설>

 5의2.
 (생 략)

 6.
 ~ 15.
 (생 략)

 ③・④
 (생 략)

| 부터 제2 | 호의7까지와 | 같음) |
|-------|--------|-----|
|-------|--------|-----|

- 3. ~ 5. (현행과 같음)
- 6. 제36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한 출생동물 을 판매한 자

| <u>3</u> | | | | | - | | _ | - | _ |
|----------|------|------|------|------|---|------|-------|---|---|
| | | | | | | | _ | _ | _ |
| | | | | | | | | | |

1. ~ 4. (현행과 같음) <삭 제>

5의2. 제22조의2를 위반하여 동 물판매업자의 중개를 통하지 아니하고 동물(개 또는 고양 이로 한정한다)을 타인에게 분양한 자

5의3.(현행 제5호의2와 같음)6. ~ 15.(현행과 같음)④·⑤(현행 제3항 및 제4항

과 같음)